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6 민사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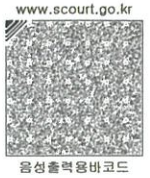
사 건 2016가합3961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황영민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대표이사 김영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최윤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재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하 '미얀마'라고만 한다)의 국민들로서 미얀마의 라카인(Rakhine)주 짝퉁(KyaukPhyu)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곳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2) 피고(구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이후 '주식회사 포스코대우'로,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 외국상사 대리업, 국내외 자원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 피고는 2000. 8.경 미얀마 에너지부(the Ministry of Energy) 산하 국영기업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이하 'MOGE'라고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고 미얀마 서부 해상 A-1 광구에서 가스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 1. 경 A-1 광구 슈에(Shwe) 가스전이 발견된 후 수년의 준비작업을 거쳐 2009. 11. MOGE, 인도석유공사(ONGC), 인도국영가스회사(GAIL), 한국가스공사(KOGAS) 및 피고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본격적으로 슈에 가스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가스전개발사



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가스전개발사업에 의하면 피고 등은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운반한 다음 이를 처리 및 재운송하기 위한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고, 짙푸 지역 내 원고들이 사용권을 갖고 있던 토지를 육상가스터미널 및 그 배후시설 부지로 결정하였다.

3) 이에 MOGE와 피고가 주축이 되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그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8, 13, 24호증, 을 제5, 9,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① 피고의 강요 또는 부당한 위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불성립하였고(미얀마계약법 제13조, 제14조), ②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강요 또는 부당한 위압에 의해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없는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으므로 무효이다(미얀마계약법 제15조, 제16조, 제19조).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미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설비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불성립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또는 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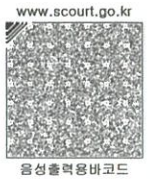
##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 가. 관련법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이 사건 청구는 미얀마 국민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에게 가액배상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있었던 장소가 미얀마이므로, 국제사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의 관련규정 및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피고인 당사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그 당사자의 생활관계 또는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국제재판관할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바, 피고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갑 제4 내지 8, 13, 24, 27호증, 을 제3 내지 5, 9 내지 13, 17,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가) 분쟁의 성격의 측면

미얀마의 토지는 국유로 되어 있고 개인이나 법인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지며 외국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즉 2011년 규제완화 이전 미얀마에서 외국인은 1년 미만 기간 동안 토지를 임차하는 것만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까닭에 외국기업이 그 사업에 미얀마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MOGE와 같은 국영기



업이나 에너지부와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을 제공받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통상적으로는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체(joint venture)나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사용권을 제공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에는 이 사건 가스전개발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별도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슈에 오프쇼 파이프라인 조인트벤처 파트너스'(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가 원고들의 상대방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다만 운영자(Operator)로 불리는 피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을 대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MOGE를 위하여 행위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전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내지 피고에 의하여 대표된 이 사건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양도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미안마 국영기업인 MOGE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회수 내지 취득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컨소시엄에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권 회수 내지 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인 토지 또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 우리법의 개념으로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협의취득 내지 수용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작용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양도가 피고 내지 피고에 의하여 대표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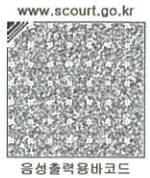
사건 컨소시엄과 사이의 양도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상적인 사인 간의 권리양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나) 청구의 성격의 측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이 강요, 위압,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의 확정을 위하여는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가치 내지 그 사용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의 체결장소와 의무이행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모두 미얀마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요, 위압, 사기 등의 행위도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부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양도계약 체결을 둘러싼 전후의 진행경과에 대한 사실확정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계약서 등 피고가 보유한 서류에 불과하고, 그 외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방법은 모두 미얀마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을 지원해 준 비정부단체(NGO) 소속의 증인과 원고당사자본인 중 일부가 대한민국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방법만으로 객관적인 심리가 되지 못함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서류의 구비나 기타 미얀마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자료의 제출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쟁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원활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은 명백하다.

더구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에서는 이 사건 토지 내지 그 사용권의 가



치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사용권을 갖고 있던 토지의 위치와 면적 및 현황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미얀마에서 토지사용권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사건의 초기부터 본안전항변을 제출함과 아울러 원고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국내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을 주장하거나 실제 보상금의 4배에 달하는 보상금이 책정되었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미얀마의 토지제도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측 주장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원고들이 승소하였을 때 집행 가능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으며, 원고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및 재판의 적정·신속·효율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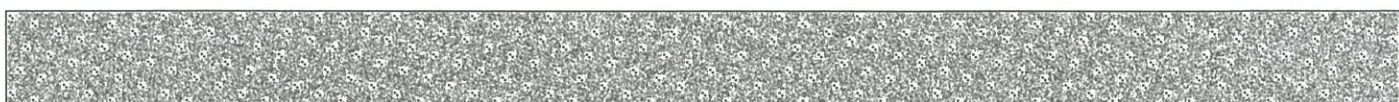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u>이원석</u>	
	판사	최석진	<u>최석진</u>	
	판사	강건우	<u>강건우</u>	





## 원고들 목록

1. 망 원 나잉의 소송수계인 더 에이 라(Daw Aye La)
2. 망 원 나잉의 소송수계인 마우 예 나잉(Maung Ye Naing)
3. 망 원 나잉의 소송수계인 마우 예 떼(Maung Ye Htet)
4. 망 원 나잉의 소송수계인 마우 예 윈(Maung Ye Win)

원고 1, 2, 3, 4의 주소 말라쿤, 레이크머 촌, 짝퉁(Malakyung yillage, Lakemaw Tract, Kyauk Pyu Township)

5. 마우 웨이

콘촌 촌, 짝퉁 시

6. 더 라아 왕킨

콘촌 촌, 짝퉁 시

7. 우 킨마우 민트

콘촌 촌, 인지나

8. 더 킨 짜

마라 섬, 짝퉁 시

9. 킨 킨 싘

콘촌 촌, 세이뿐케이

10. 우 웨이 툠 카인

마라 섬, 짝퉁 시

11. 우 툠 소



마라 섬

12. 마우 쩌 따우

레이그머, 마라 섬

13. 마누

마라 섬

14. 우 세인 재이

마라 섬

15. 더 라아 온 메이

마라 섬

16. 킨 인 인 머

마라 섬

17. 세인 라아 퓨

레이그머, 마라 섬 촌

18. 우영 서 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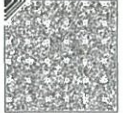
온따운, 온떠진 촌

19. 우 마우 포우 조

콘촌 촌, 짝퓨 시

20. 더 노에 미야인 마

레이그머, 마라 섬 촌



# 정본입니다.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송애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